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2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5. 26.

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6.17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청소행정과장 이주현】

가. 제안이유

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에 따라 환경부 기준의 구체적 분리배출을 적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조정(안 제2조3항)
 -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지만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포함되어 온 다류(茶類), 아이스트림류 업종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

-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제작 물품 구체화(안 제8조제2항)
-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반영 (안 제10조제1항)
- 문전수거제 정착화를 위한 문전수거통 사용 명시 (안 제10조제2항)
- 용어의 미비점 보완 등(안 제12조제1항~제3항, 제15조제1항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에 따라 환경부 기준의 구체적 분리배출을 적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 - (안 제2조3항)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조정하여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지만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포함되어 온 차류(茶類), 아이스크림류 업종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임.
 - (안 제8조제2항)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·배포에 대한 근거 조항 구체화하는 내용임.
 - (안 제10조제1항)에는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기준 표준화 권고 반영 환경부 기준으로 표준화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제도 정착에 기여 하는 내용임.

- (안 제10조제2항)문전수거제 정착을 위한 문전수거통 사용 규정하는 내용임.
- (안 제12조제1항~제3항, 제15조제1항)에는 용어의 미비점 보완 등을 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에 따라 환경부 기준의 구체적 분리배출을 적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
- 마포구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감량목표치가 자치구중 가장 선두에 있어 환경부장관상을 여러 번 수상한 점은 고무적이며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가정 및 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절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